

1 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개요(전북)

구분	주요 내용
평가 대상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자: 평가개시일 현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직(휴직, 파견 포함)중인 모든 교원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 등 포함),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전일제로 근무하는 계약제교원 포함 •평가제외자: 교육행정기관, 연수기관 소속 및 파견교사 -예: 1년간 파견교사, 인턴장학사, 학습연구년특별연수 대상자 등 -학교자율: 근무기간 2개월 미만 •결과활용제외자: 평가개시일 기준 2개월 미만 근무자, 당해학년도 2월 정년퇴직자, 계약제교원
종류 / 참여자	<p>[동료교원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대상자로 결정된 교원 전체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동료교원 등 포함 5인 이상 -교장·교감 중 1명이 모든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금지 -교장, 교감, 수석교사는 모든 교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함 -소규모학교 전체 교원을 하나의 평가참여자(그룹)로 구성 <p>[학생만족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학생 전체 -평가개시일 기준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은 참여에서 제외 -단위학교의 집중이수 교과,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 등의 평가참여자의 범위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도하는 학급수가 과다한 경우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평가시스템에서 학급 무선표집 기능 사용(최소 3학급 이상으로) <p>[학부모만족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자녀를 지도하는 모든 교사 각각에 대하여 당해 학부모가 선택하여 참여 가능 -평가개시일 기준 역산하여 2개월 미만 재학한 학생의 학부모는 참여에서 제외) •교장, 담임교사 외 1인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학부모 자율 선택)
주기 /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실시, 11월말까지 평가 종료
평가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교원평가는 전국공통 평가지표 중심 구성 -10이상 지표내에서 12문항 이상, 자유서술식응답 양식 1문항 이상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 문항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의 각 요소별 1문항 이상을 포함하여 총 5문항 이상으로 구성, 자유서술식 응답 양식 1문항 이상 제시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단계도 체크리스트 문항과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결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를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연수 실시의 기초자료로 활용 •단위학교는 교내 자율장학 지원 연수 희망 교사에 대한 행정적 지원, 필요한 요청장학 및 수업컨설팅 등 단위학교 연수 계획 수립에 활용

2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 성찰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내실화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공교육 내실화

3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근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3조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217호, 2017.5.19.개정)
시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자체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청(및 학교)이 시행
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학교 운영 계획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가능한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계획 수립시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주요사항을 구성원에게 공지 및 연수함

4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행

가. 교육활동 소개자료

- '교원의 교육활동 소개자료'란 평가대상자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계획과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자료임
- 평소 개인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교육활동 포트폴리오(온라인평가시스템에서 홈페이지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링크)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대상자인 교원은 객관적인 평가 여건의 조성을 위해 평가참여자에게 자신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에 평가문항과 관련된 판단정보를 평가 종류별로 자율적으로 제시함

나. 자기평가

- 학년 초에 수립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교육활동자료, 실적 등을 참고하여 스스로 평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완료 후 결과를 통보 받은 다음 자기 분석 자료로 활용
- 자기평가를 먼저 실시해야만 동료교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자기평가 결과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며, 「능력개발계획서」작성 시, 다른 평가결과와 비교·분석하는 자료로만 활용함

다. 동료교원평가

- 다면평가 방식(교원 간 상호평가)으로 평가대상자인 교원은 평가참여자로써 동료교원에 참여해야 함
-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하는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와 달리 동료교원평가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로 평가에 임하여야 할 것임
- 동료교원평가 시, 먼저 교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만 다른 교사에 대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교원 간 서열화의 목적이 아니라 해당 교원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연찬과 전문성 개발에 활용

라. 학생만족도(의견)조사

- 교원이 제공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직접적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로 학생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표시
- 학생은 성숙하고 공정한 자세로 만족도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

(※평가관리자의 학생에 대한 사전연수 실시)

-평가관리자(교감)는 학생들의 집중화 현상, 욕설, 음란성 글 게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충분히 안내

마. 학부모만족도조사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만족도조사'로 교원의 교육(지원)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표시
- 학부모의 온라인 또는 종이설문 평가 방식 선택 기회 제공

※절차안내(종이설문지)

- 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참여 방식 결정(온라인 또는 종이설문지병행)
 - ② 병행으로 결정했을 경우 학부모만족도조사 실시 이전 참여 방식에 대한 학부모 '개별' 희망조사 실시
- 종이설문지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후 참여 방식 변경 및 중복 참여가 불가함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종이설문지 선택이 50%(세대수 기준) 미만 시 교장, 담임에 한해 종이설문지
- 종이설문지 선택이 50%(세대수 기준) 이상 시 모든 교원 배부
- *이때 종이설문지를 선택한 학부모에 한해서 제공함

5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처리

가. 평가결과 확인

- 평가가 완료되면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중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확인

나. 원자료 열람 요청 및 열람

-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열람 기간 종료일 이후, 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원자료 열람 요청'기간 중 평가관리자(교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원자료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관리자(교감)는 요청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학교장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열람 여부를 최종 결정
- '원자료' 열람이 최종 결정되면 평가관리자는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요청자에게 열람 권한을 부여하고, 요청자인 평가대상자 개인은 원자료를 확인

※'원자료'라 함은 평가 종류별 문항, 응답 수 및 비율, 환산평균, 자유서술식 응답 결과 등이 포함된 자료를 말함

※종이설문지 방식의 경우, 취합된 종이설문지 자체도 원자료로 봄

다.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평가대상자는 각 평가 지표별로 '자기평가 결과'와 '동료교원평가 결과,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의견을 기술하고, 향후 개선 계획 및 교수·학습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 요청 사항을 포함한 「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

라. 단위학교 결과분석 및 운영결과 보고서

- 평가관리자는 단위학교 평가결과를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구성원 간 공유하며 평가결과를 활용한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 실시를 권장
- 평가관리자는 교사별 평가결과 및 능력개발계획서, 단위학교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장에게 제출(내부결재, 보안 유의)
- 단위학교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수석교사, 특수교사(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 등 일부교사의 개인별 평가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부 유출 등 보안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평가관리자가 직접 작성해야 함
-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능력개발 지원 및 익년 학교교육계획을 수립

6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 활용

가. 기본 방향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 ①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 ②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 ③ 능력향상연수 등 3가지 연수 기본모형을 제시, 지원

나. 평가 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유형(안)

연수 유형	내 용	연 수 시 간
특 별 연 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1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기본과정,심화보충과정 등	15시간 이상
능력향상연수	단기 능력향상연수	60시간 이상
	장기기본 능력향상연수 장기심화 능력향상연수	150시간 이상

7 정보공시

가. 시기: 평가 실시 다음 연도(2020년) 4월 중

나. 내용

- 동료교원평가지,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지
- 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 (학교 평균값)